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 의견서 3부
 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6년 8월 2일

청 원 인

성 명 : 김나연

주 소 :

전화번호 :

소 개 의 원 : _____ (인) 외 _____ 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
	성명 : 김나연
건명	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
소개년월일	2016년 8월 2일
<p>소개의견</p> <p>본 청원인 김나연 외 21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청소년 의원입니다.</p> <p>제 14회 정기회의 및 청소년 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<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>입니다.</p> <p>2018년 대학입시(이하 대입)부터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(이하 수능)의 외국어영역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한다는 교육부의 발표 이후, 2018년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입 직전에 입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.</p> <p>또한 고려대의 경우, 2018년부터 입학전형에서 논술전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, 이는 고려대 논술을 준비하던 많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.</p> <p>위의 사례와 같이 잦은 교육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갑작스러운 입시제도 발표는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.</p> <p>청소년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다음과 같이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.</p> <p>고등교육법 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)</p> <p>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3년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 (이하 "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"이라 한다.)을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,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2년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(입학전형 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.)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

소 개 의 원

인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최근 들어 정시 모집 정원이 대폭 감소하고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고등학교 생활이 대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. 하지만 현재 법률상으로는 대입을 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.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생활의 2/5가량을 아무런 정보 없이 계획을 세우고 입시준비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제도인 것이다.

또한 일부 입시학원에서는 대입정보가 제공되기 전 미리 대학정보를 찾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되어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.

특히나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대입정보 하나만으로도 입시의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이 크다. 그러나 이러한 대입정보를 학교생활의 2/5, 3/5가 지난 상황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일부를 아무런 정보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학생들의 입시에 큰 걸림돌이 된다.

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입시준비를 위하여 본 법안을 청원하는 바이다.

2. 주요골자

현행 고등교육법에 제 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)을 개정한다.

고등교육법

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)

-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약체는 **매 입학연도의 3년 전까지**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(이하 "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"이라 한다.)을 공표하여야 한다.
- ②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,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**매 입학연도의 2년 전까지**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(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.)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신구문대조표-

현행	개정문
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)	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)

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(이하 “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”이라 한다)을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 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 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(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)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1.1.]

<개정>

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**매 입학연도의 3년 전까지**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(이하 “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”이라 한다.)을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 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,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**매 입학연도의 2년 전까지**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(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.)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청원인 성명 :

청원인 주소 :

청원인 전화번호 :